

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1월 17일,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3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철호 도시관리국장)

가. 상정 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·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 회의 규정 정비
(안 제6조제4항)
-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개정에 따른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설립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" 생략 "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5. 토 론 요 지 : 박노섭 위원외의 수정 동의안

6. 수정안의 요지 (별 첨)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수정 동의안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) ① ~ ③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.	(개정안과 같음)
제14조(도시·건축공동위원회) ① 영 제2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이하 “공동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(개정안과 같음)
1.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	(개정안과 같음)
2.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	(개정안과 같음)
3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	(개정안과 같음)
(신설)	②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②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제4항 및 제5항,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③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제4항 및 제5항,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